

현	행	개	정	안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법제26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토지 세의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8. 30.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8.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8.24.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5.8.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류승권 세무
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 및 지역발전
촉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
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
수)

동 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장 입지
난 해소의 종합대책으로 현재도(시·군)지역
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특별
시·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시킴으
로써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0%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구 세원확충을 위하여는 되도록 감면
대상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하
나 난지도 등 토지의 가용자원이 풍부한
마포구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유치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세원확충

에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및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결과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일자 : 1995.8.23.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공장 입지난해소 및 지역발전촉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동조
례를 개정하는것임.

2. 주요 개정골자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최초과세기준
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16조의2)

3. 개정근거

- 지방세법(1995.1.5. 법률제4297호)제276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1.5.
법률제4919호)제29조
- 지방자치법(1995.1.5. 법률제4877호)제15
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아파트형 공장에 대한감면)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

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5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아파트형공장에대한감면)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9. 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8.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5.8.23.
-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95.8.31.)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류승권 세무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

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의 범위를 정하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무원의 특별공적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축소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1건당 30만원이하로 하고 이 경우에도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지급한도를 제한함(안 제3조제1호 및 제3조의2)